

토양오염대책기준(제20조 관련)

물질	오염 기준 (단위: mg/kg. 다이옥신의 경우에는 pg-TEQ/g)		
	1지역	2지역	3지역
1. 카드뮴	12	30	180
2. 구리	450	1,500	6,000
3. 비소	75	150	600
4. 수은	12	30	60
5. 납	600	1,200	2,100
6. 6가크롬	15	45	120
7. 아연	900	1,800	5,000
8. 니켈	300	600	1,500
9. 불소	2,400	3,900	6,000
10. 유기인화합물	-	-	-
1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3	12	36
12. 시안	5	5	300
13. 페놀	10	10	50
14. 벤젠	3	3	9
15. 톨루엔	60	60	180
16. 에틸벤젠	150	150	1,020
17. 크실렌	45	45	135
18. 석유계총탄화수소(TPH)	2,000	2,400	6,000
19. 트리클로로에틸렌(TCE)	24	24	120
2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2	12	75
21. 벤조(a)피렌	2	6	21
22. 1,2-디클로로에탄	15	20	210
23.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다)	500	1,000	3,000

※ 비고

- 1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광천지·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학교용지·구거(溝渠)·양어장·공원·사적지·묘지인 지역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2. 2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염전·대(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창고용지·하천·유지·수도용지·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 및 잡종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부지만 해당한다)인 지역

3. 3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잡종지(2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다)인 지역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국방·군사시설 부지

4. 벤조(a)피렌 항목은 제한물질·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과 폐받침목을 사용한 지역(예: 철도용지, 공원, 공장용지 및 하천 등)에만 적용한다.

5. 법 제17조에 따른 토양오염대책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토양오염대책기준은 지정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지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목변경이 예정된 경우에는 변경 예정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받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공된 경우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후 공사가 착공된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목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가 착공된 경우